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6. 5.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5월 17일

○ 회부일자 : 1996년 5월 17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5월 23일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 운영 위원중 내무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하고 동위원회 간사 국민운동 지원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하며
- '90. 3. 23 조정후 등결한 자연학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액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코자함

나. 주요 골자

- 제6조3항 : 운영위원 내무국장 → 보건환경국장
- 제6조4항 : 간사 국민운동지원과장 → 환경관리과장
- 제9조(별표:시설사용료) : 전국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위원중 내무국장을 보건환경국장으로, 간사 국민운동지원
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90. 3. 23일 조정후 동결한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액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96. 2. 13)과 더불어
서둘러 개정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개정조례안 : 별 첨

9.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